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7632
결재일자	2015.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41호

주 무 관	희망복지지원장	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복지장	부 구 청 장
이현강	박주일	유재용	오영수	09/01 정연찬
협 조	규제개혁팀장	강성문		
	주무관	안은진		
	주무관	김경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개정사유: [상위법\(설치 근거조항\) 변경](#) - 2015. 7. 1.

-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사회복지협의체 ⇒ 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 확대 : 30명 이내 ⇒ 40명 이내
- 부패영향평가 대비 위원 자격제한 규정 신설(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 협의체 기능확대 :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지표 개발·연구 등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5. 9월 중
- 의회안건 제출 : 2015.10월 중
- 공포 및 시행 : 2015.11월 중

주민생활복지국
복 지 정 책 과

사전 검토사항

해당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여부	비고
추진근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방침 <input type="checkbox"/> 별도규정 없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업추진유형	<input type="checkbox"/>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회성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년)	
예산확보사항	<input type="checkbox"/> 신규 확보 필요 <input type="checkbox"/> 확보 완료 (국 , 시 , 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예산 사업	예산팀조 ()
이해관계인유무	<input type="checkbox"/> 주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단체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무 <input type="checkbox"/>	
타자원활용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중앙부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울시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민간단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업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보필요성	<input type="checkbox"/> 홍보대상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보물심사 협 조 ()
	<input type="checkbox"/> 보도자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I 개정 필요성

☐ 상위법(설치 근거조항) 변경 - 2015. 7. 1.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법 부칙 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 근거법령 제정·시행에 따른 상·하위법상 관련용어 일치 및 의미 명확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확대 및 역할 재정립에 따른 관련내용 반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시달 (2015. 7. 3.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현행조례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 제정일자 : 2005. 6. 7.
-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II 주요 개정내용

☐ 상위법령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협의체 명칭 변경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변경조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인원 확대 : 30인 → 40인 이내

☐ 부패영향평가 대비 위원 자격제한 규정 신설

- 조례 제3조 제8항 : 위원 결격사유 추가(파산선고자, 법률위반자 등)
- 조례 제7조의 2 :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항 신설

☐ 심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위원에게 심의안건 사전 공지 명시(5일전)

※ 주민생활복지국 위원회 운영표준안(2014. 9.15.) 내용 반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

- 협의체 역할범위 확대 :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지표 개발·연구 등

제3조(기능)	구조문	신조문
제1항 : 다음 각호에 대해 심의·건의 자문한다	2. 지역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와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¹⁾ 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²⁾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³⁾ 에 관한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동단위 사회복지협의체(징검다리복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명시
- 필요시 구에서 인력 및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상위법 변경에 따른 신·구 협의체 비교

구 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범 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중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영역 확대
구 성	1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위원 수 확대(10명 이상 40명 이하)
운 영	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구에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가능
협의체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 또는 건의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 지역사회 단위 사회보장 추진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등

1) 지역주민의 복지만족도, 수급자 처리기간 단축율 등 설정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객관화된 수치

2) 국고보조로 지급되는 사회복지급여(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급여 등)

3) 구 단위 자체 사회복지 추진사업(지역고유사업 등)

III

개정효과

- ☐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기능확대**의 법적 근거 마련
 - 상위법과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구축
 -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복지증진 도모
- ☐ 위원 자격 제한 규정(제척·기피·회피) 신설로 운영의 공정성 확보
- ☐ 동 징검다리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IV

영향분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향

사회복지대상자 발굴·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복지 증진

- ☐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협의회 기능확대에 따른 위원수 증대가 가능하여 주민참여기회 확대
 - 동단위(징검다리) 복지협의체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축소
- ☐ 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
 - 객관적 자료에 기초 한 지역사회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민욕구 파악
 - 분명한 정책 아젠다를 기초로 복지분야 세부운영계획 도출 및 정책 반영

V

추진일정

- ☐ 조례 개정 방침 수립 : 2015. 9. 3.
-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5. 9월 중
- ☐ 의회안건 제출 : 2015.10월 중
- ☐ 조례공포 및 시행 : 2015.11월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협의체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되는 협의체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

- 1)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개정(제1조, 제3조)
-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개정(제명 및 제1조 ~ 제3조의2)

나. 조례가 확장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 1) 제2조(기능)제1항 각 호 정비
- 2) 제3조(구성)제1항 정비
 - 구성 인원 :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개정
- 3) 제6조(위원의 임기)제1항 내용 추가
 -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4) 제9조(회의 등)제5항 신설
 -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동 단위 협의체 역할 부여 : 제3조의 2제3항 (대상자발굴, 복지자원연계 등)

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 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정비 :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
- 2) 제3조(구성)제3조제3항 : “호선”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
- 3) 제3조(구성)의 2 :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동 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마.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미비조항 신설 : 제7조의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2015. 9월(예정)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자체평가 개선의견 반영

5. 영향평가

상위법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확대 사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조례가 가지고 있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1.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가) 협의체 기능확대로 ‘자생적인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1)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지향 : ‘사회복지’ ⇒ ‘사회보장’(개념전환)
- 2) 복지를 비롯한 문화, 교육, 주거, 고용 등 협의체 역할범위 확대
- 3) 동 단위(징검다리) 협의체에 명확한 역할부여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 협의체 인원수 증가로(30명 이상 ⇒ 40 이상) 주민참여기회 제공

- 1) 기능 확대에 따른 전문분야 분권화를 위해 참여 위원수 증원 가능
- 2) 관련기관·법인 등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분과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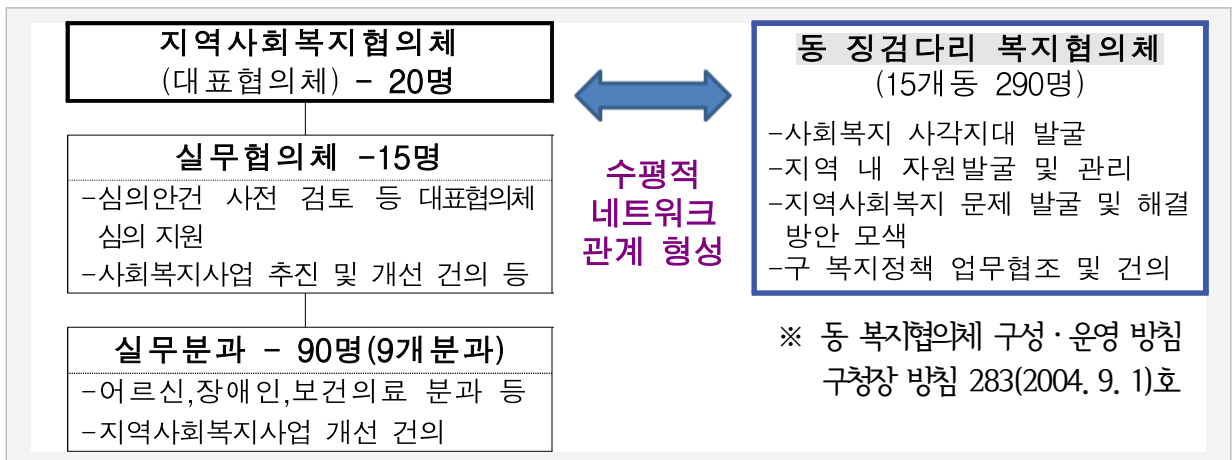
2. 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

가) 사회보장지표 개발·연구 기능이 추가되어 전략적인 복지행정의 기틀 마련

- 1) 지역사회 사회복지 현황 및 향후 목표설정에 필요한 객관적 수치 개발
- 2) 분명한 정책 아젠다 설정으로 복지분야 세부운영계획 도출 및 정책반영

나) 동 단위 협의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관협력 극대화 도모

- 1) 지난해 출범한 징검다리 복지협의체를 활성화 하여 민간자원 적극 발굴
- 2) 명확한 역할 분담 및 동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문제해결능력 함양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4”를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같은항 제1호 “지역사회복지계획”를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하며, 같은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항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사항 등

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30명 이하”를 “40명 이하”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 2제2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호선하되”를 “위원중에서 호선하되”로 하며, 같은조 제4항 중 “30명 이하”를 “40명 이하”로 하며, 같은조 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로 하며, 같은조 제7항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한다.

제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의2의 제목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같은조 제1항 “동 복지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며, 같은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조제2항과 제5항”로 하고, “각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각 협의체”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을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각 협의체에 출석한”을 “회의에 참석한”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예산”을 “인력 및 예산”으로 “원활한”을 “원활한”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사항 등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부구청장, 주민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활고용팀장, 방문보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삭제 2009.06.05>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동 협의체는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각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촉한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p>	<p>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u>보장</u>협의체 운영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회복지사업법</u>」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 <u>지역사회보장협의체</u> -----.</p>
<p>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u>지역사회복지협의체</u>(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p>	<p>제2조(기능) ① ----- <u>지역사회보장협의체</u>(이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역사회복지계획</u>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u>지역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u> 3. <u>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와 개발에 관한 사항</u> 4. <u>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5. 그 밖에 <u>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사항</u> 등 6. 「<u>긴급복지지원법</u>」 제12조에 따른 <u>긴급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역사회보장계획</u> ----- 2. <u>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u> 3. <u>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u> 4. <u>사회보장 추진에 관한사항</u> 5. <u>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6. ----- <u>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u> 7. 구청장이 <u>지역사회보장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8. 그 밖에 <u>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사항</u> 등
<p><신 설></p>	

현행	개정안
<p>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u>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u>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p>	<p>② ----- <u>사회보장과</u> <u>관련된 서비스를</u> ----- -----.</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u>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u>를 둔다.</p>	<p>③ ----- ----- -----<u>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u> -----.</p>
<p>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u>30명 이하</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3조(구성) ① ----- ----- <u>40명 이하</u> -----.</p>
<p>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u>사회복지사업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부구청장, 주민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② ----- <u>법 제41조제3항</u> ----- ----- ----- -----.</p>
<p>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u>호선하되</u>,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p>	<p>③ ----- <u>위원</u> <u>중에서 호선하되,</u> ----- -----.</p>
<p>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u>30명 이하</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 ----- <u>40명 이하</u> ----- -----.</p>
<p>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u>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u>」 제1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활고용팀장, 방문보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⑤ ----- ----- <u>같은 법 시행규칙</u> <u>제6조제2항</u> ----- ----- -----.</p>

현 행	개 정 안
<p>⑥ <삭제 2009.06.05></p> <p>⑦ 실무협의체에 <u>지역사회복지</u>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p> <p><신 설></p> <p>제3조의2(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생 략)</p> <p>③ 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④ (생 략)</p> <p>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u>당해</u>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 ③ (생 략)</p>	<p>⑥ <삭제 2009.06.05></p> <p>⑦ ----- <u>지역사회보장</u>----- ----- -----.</p> <p>⑧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u>」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p> <p>제3조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 ----- ----- 동 <u>지역사회보장협의체</u>(이하-----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 <u>해당</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p>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 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각 협의체 및 실무협의 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촉한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p>	<p>제5조(위원명단 공개) ----- ----- 제3조제2항과 제5항의 ---- ----- 각 협의체 ----- ----- -----.</p>
<p>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6조(위원의 임기) ① ----- ----- . <u>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u></p>
<p><신 설></p>	<p>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신 설></p>	<p>제7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 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 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제9조(회의 등) ① ~ ④ (생략) <신 설></p>	<p>제9조(회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안
<p>제10조(회의록) ① (생략) 1. ~ 4. (생략)</p> <p>5. 그 밖에 <u>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u>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u>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u></p> <p>제14조(회의 수당) <u>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u>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u>예산</u>을 보조하며, <u>원활한</u>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p> <p>5. ----- <u>각 협의체 위원장</u> ----- -----</p> <p>② ----- ----- <u>공개하여야 한다.</u></p> <p>제14조(회의 수당) <u>회의에 참석한</u> ----- ----- ----- ----- -----.</p> <p>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 ----- <u>인력 및 예산을</u> ----- <u>원활한</u> ----- -----.</p>